

# 2023년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서울관광플라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910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서울관광플라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 II.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서울관광플라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주요내용

- 가. 2022회계연도 관광진흥기금 결산 및 여유자금 예금상품 가입('23.3.)에 따라 증가한 예치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나.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수입·지출계획 변경 내역

-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분(항·목)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	2,539,829	2,968,388	428,559
216 이자수입	20,793	45,405	24,612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20,793	45,405	24,612
714 예치금회수	519,036	922,983	403,947
714-01 예치금회수	519,036	922,983	403,947
721 전입금	2,000,000	2,000,000	-
721-03 기타회계전입금	2,000,000	2,000,000	-

- 지출계획

(단위: 천원, %)

구분(정책·단위·세부사업)	당 초	변 경	증 감	증감률
합 계	2,539,829	2,968,388	428,559	16.9
서울 관광산업 생태계 강화	1,604,000	1,604,000	-	-
관광업계 자생력 제고	1,604,000	1,604,000	-	-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 지원	1,500,000	1,500,000	-	-
서울형 안심 MICE 모델 구축	104,000	104,000	-	-
<b>재무활동</b>	<b>925,829</b>	<b>1,354,388</b>	<b>428,559</b>	<b>46.3</b>
보전지출	925,829	1,354,388	428,559	46.3
여유자금 예치	925,829	1,354,388	428,559	46.3
행정운영경비	10,000	10,000	-	-
기본경비	10,000	10,000	-	-
기금 관리비	10,000	10,000	-	-

다.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수입·지출계획 변경 내역

-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분(항·목)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	386,620	469,236	82,616
216 이자수입	4,242	12,420	8,178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4,242	12,420	8,178
714 예치금회수	134,378	208,816	74,438
714-01 예치금회수	134,378	208,816	74,438
722 예탁금및예수금	248,000	248,000	-
722-04 예탁금이자수입	248,000	248,000	-

- 지출계획

(단위: 천원, %)

구분(정책·단위·세부사업)	당 초	변 경	증 감	증감률
합 계	386,620	469,236	82,616	21.4
재무활동	386,620	469,236	82,616	21.4
보전지출	386,620	469,236	82,616	21.4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적립금 (여유자금 예치금)	386,620	469,236	82,616	21.4

### Ⅲ. 검토의견

#### 1.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4억 300만원)와 이자수입(2,400만원)이 증가되어,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4억 2,800만원)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재원을 여유재원으로 지출계획 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sup>1)</sup>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sup>2)</sup>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수입계획)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지출계획)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재무활동(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46.3%, 4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2. 7), p.296

〈표 3-1〉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당 초 ( A )	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 B )	증 감 ( C=B-A )	증 감 륜 ( D=C/A )
지 출 합 계	2,539	2,968	428	16.9
서울 관광 산업 생태 계 강화	1,604	1,604	-	-
재 무 활 동 ( 관광 체 육 국 관광 정책 과 )	925	1,354	428	46.3
보 전 지 출 (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	925	1,354	428	46.3
여 유 자 금 예 치	925	1,354	428	46.3
행 정 운 영 경 비 ( 관광 체 육 국 관광 정책 과 )	10	10	-	-

※ 자료근거 : ①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지출계획,  
②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22. 5.25) 재구성

○ 아울러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의 조성액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 ①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업계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 비용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 2.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

- 서울관광플라자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잉여자금 8,2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7,400만원)와 이자수입(8백만원)에 반영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8,200만원)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산결과에 따라 예치금을 증액 조정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sup>4)</sup>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sup>5)</sup>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수입계획)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지출계획)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재무활동(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21.4%, 8,2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5)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2. 7), p.296

〈표 3-2〉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당 초 ( A )	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 B )	증 감 ( C=B-A )	증 감 륜 ( D=C/A )
지 출 합 계	386	469	82	21.4
재 ( 관 광 체 육 국 활 동 ) ( 관 광 진 흥 기 금 정 책 과 )	386	469	82	21.4
보 전 지 출 (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 )	386	469	82	21.4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적립금	386	469	82	21.4

※ 자료근거 :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지출계획, ②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23. 5.30) 재구성

○ 아울러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조성액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sup>6)</sup>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6)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②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 비용
2.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에 필요한 제반 비용 등